

# 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서

1/2

심의일자	2018.06.12(화)		
사업명/신청위치	영등포 1-13 재정비촉진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/ 영등포구 영등포동5가 32-8번지 일대		
의결번호	2018-12-1	심의결과	조건부의결
<p>[심의 내용] 경관 + 건축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아래 지적사항을 반영하는 조건으로 의결되었으며, 지적사항의 반영여부는 인허가권자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</li> <li>■ 참고로 본 건축위원회 심의는 「경관법」 제28조 및 「건축법」 제4조에 의한 경관·건축에 의한 건축 관련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심의로서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적합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.</li> </ul> <p>&lt; 건축 분야 &gt;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<input type="checkbox"/> 건축계획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공공보행통로에서 각 주동으로 들어가는 입구에 사적영역임을 나타내는 조경 시설(문주, 아치 등) 설치 바람(권장).</li> <li>○ 주민공동시설의 용적률 완화신청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어린이집 (338.12㎡), 경로당(225.05㎡), 작은 도서관(217.03㎡)의 면적을 용적률 완화 인정하고, 발코니 삭제기준 완화신청은 신청한대로 76㎡형에 대하여 5%, 84㎡A·B·D형에 대하여 10% 완화 인정함.</li> </ul> </li> <li><input type="checkbox"/> 구조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하중 전이보와 수직 PIT 등(파이프 샤프트나 변기 배관)이 간섭되는 부분이 없는지 확인하고, 필요한 경우 하중 전이보의 상부 주근이 절단되지 않도록 세부 계획 바람.</li> <li>○ 터파기 설계시 어스앵커 설치 및 해체 순서도를 상세히 작성하고, 어스 앵커가 부담하던 토압을 신설 콘크리트 지하 외벽이 부담해야 할 경우, 어스앵커 제거 시점까지 양생되지 않은 외벽이 충분한 강도를 가지고 있는지 확인 바람.</li> </ul> </li> <li><input type="checkbox"/> 환경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태양광 패널 배치시 경관을 고려하되 모듈의 효율을 최대화 할 수 있도록 파라펫으로 인한 음영 영향을 받지 않게 계획 바람.</li> </ul> </li> <li><input type="checkbox"/> 조경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공개공지 활성화를 위하여 “조치계획1”에서 공개공지2의 식재는 기존 계획 대로 밀집시키고, 불특정 다수인의 이용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휴게시설 등을 추가 배치하여 가로공원으로 계획하기 바라며, 공공보행통로 진입부 양측 녹지는 대칭된 분위기로 조성하기 바람.</li> </ul> </li> </ul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- 계속 -</p>			

2018.6.12.  
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

# 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서

2/2

심의일자	2018.06.12(화)		
사업명/신청위치	영등포 1-13 재정비촉진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/ 영등포구 영등포동5가 32-8번지 일대		
의결번호	2018-12-1	심의결과	조건부의결
[심의 내용] 경관 + 건축			
<p>&lt; 건축 분야 &gt;(계속)</p> <p><input type="checkbox"/> 조경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“조치계획6”의 어린이 공원에는 보호자 휴게 공간이 필요하므로 팔각정 등 휴게시설을 설치하고, 주변 비상차량 등으로 인한 안전대책으로 장식가벽 보다는 블라드 등을 이용하여 계획 바람.</li> </ul> <p>&lt; 공통사항 &gt;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친환경 및 에너지 절약계획 관련 사용승인 시 승인권자에게 아래 사항 적용 여부를 확인받으시기 바람.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가. 녹색건축물 인증 : 우수(그린2)등급 이상</li> <li>나.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 주거 2등급, 비주거 절감기술 적용</li> <li>다. 신재생에너지 설비 공급률 주거 4%, 비주거 9% 적용</li> <li>라. 건축물 에너지소비총량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공동주택 1차 에너지소요량 147.55kWh/m<sup>2</sup>·y (기준150kWh/m<sup>2</sup>·y)</li> </ul> </li> </ul> </li> <li>2. 옥상에 설치되는 냉각탑, 급·배기구, 안테나 등 건축설비는 고층조망(SKY VIEW)을 고려하여 입면 및 상부에서 보이지 않도록 그릴 등을 설치하여 디자인 마감하시기 바람.</li> <li>3. 수돗물 재처리시설(중앙정수처리장치) 설치·가동은 깨끗하고 안전한 서울의 수돗물 아리수의 수질 저하는 물론 경제적인 손실과 에너지 과다사용, CO<sub>2</sub> 발생으로 저탄소 녹색성장에 역행하는 “불필요한 시설”이므로 설치제한을 권장함.</li> <li>4. 다음 대상의 건축물의 경우는 빗물관리시설을 설치 권고(서울특별시 물순환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조례 제12조).            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) 대지면적 1,000m<sup>2</sup>이상이거나 건축 연면적 1,500m<sup>2</sup>이상의 건축물.</li> <li>2) 물순환 빗물관리시설의 세부계획은 ‘주택정비사업 빗물관리 가이드라인’을 참고하여 적용.</li> </ol> </li> <li>5. 『서울특별시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기본 조례』 제7조에 따라 건축물은 유니버설디자인으로 설계·시공하기 바람. 끝.</li> </ol>			

2018.6.12.  
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